

의안번호	제 59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
----------	----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2일

발 의 자: 이의영·김영주·황규철  
이숙애·서동학·임기중  
박성원 의원

##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

다. 교직원단체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라. 보조사업의 범위 세분화(안 제4조)

-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9. 1. ~ 2018. 9. 20.(20일간, 특이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한다.

제2조 중 “교원단체가 교원”을 “교직원단체가 교직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을 “교육”으로 한다.

제3조 제목 “(교원단체의 범위)”를 “(교직원단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단체로서 주된 사무실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제1항 중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원단체에”를 “교직원단체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원단체는”을 “교직원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한다.

제6조 중 “교원단체”를 “교직원단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감이 <u>교원단체</u>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금의 교부)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u>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u>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제3조(<u>교원단체의 범위</u>) “<u>교원단체</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단체로서 주된 사무실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단체</u>를 말한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교직원단체</u>----- ----- -----.</p> <p>제2조(보조금의 교부) ----- ----- <u>교</u> <u>직원단체가 교직원</u>----- <u>교육</u> ----- ----- -----.</p> <p>제3조(<u>교직원단체의 범위</u>) “<u>교직원단체</u>” ----- ----- <u>&lt;삭제&gt;</u>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에</p>

<신 설>

<신 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4. (생략)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교원단체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원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직원단체-----

1. 교직원의-----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 교직원단체-----

② ----- 교직원단체에 ----- . -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원단체는 교육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준용)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직원단체는 -----  
-----  
-----.

③ -----  
-- 교직원단체-----  
-----.

제6조(준용) 교직원단체-----  
-----  
-----  
-----  
-----  
-----.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교직원단체 및 보조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액 분석 필요

## 2. 비용 발생 요인

-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 가능한 교직원단체 수 변동 가능
-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부 가능한 보조사업의 범위 변동 가능

## 3. 관련조문

- 제3조(교직원단체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 4. 비용 추계결과

1.1. 추계의 전제 :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가능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제함

- \* 1. 학생교육과 관련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추계 결과 : 1개 사업에 대해 9백만원씩 지원할 경우 연간 4천 5백만원 재정소요 예상

1.3. 재원조달방안 : 교육비특별회계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중등교육과 교원단체담당 김정훈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 학생교육 관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 교직원 복지증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 으로 추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재원 조달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의존 재원	소 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국고보조금	-	-	-	-	-	-
	보통교부금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특별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